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8. 10 선고 2020나322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8. 10 선고 2020나32265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8. 19 선고 2018가단345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A

변론 종결 2021. 7. 6.

판결 선고 2021. 8. 10.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8. 19. 선고 2018가단345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7. 9. 11. 접수 제119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백대현

판사이재민

판사고병용

별지